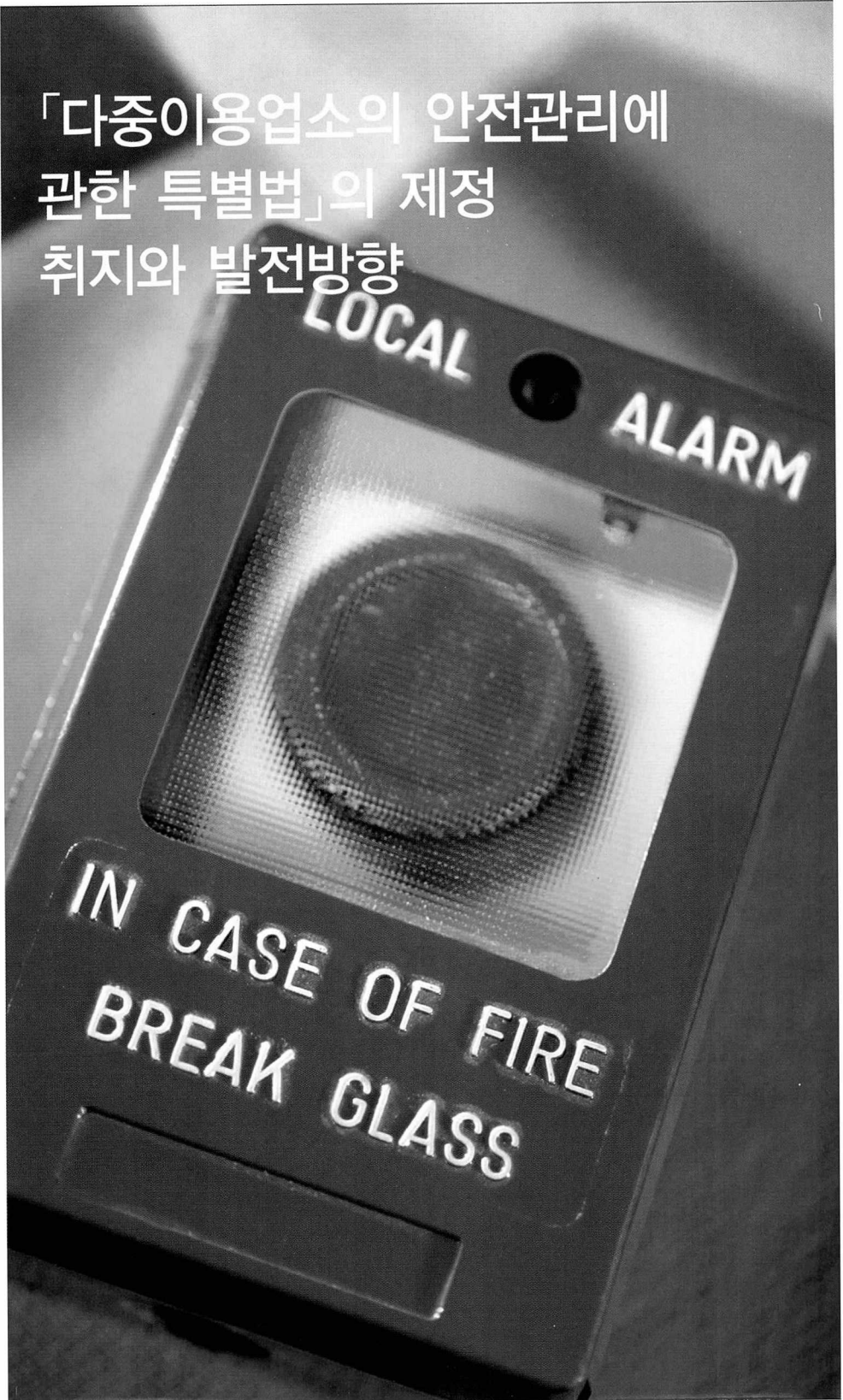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위험과 대책

글 | 이영기
소방정책팀 소방제도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발전방향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1. 머리말

사회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새로운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있고, 그 형태도 대형화·초고층화·밀집화되는 등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다중이용업소에서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방관계법령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충분한 화재안전시설을 갖추게 할 수 없어, 화재 발생시 영업주의 초기 대응 능력 미흡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에 관한 제도가 없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형편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새롭게 생겨나는 신종 다중이용업에 대해 화재안전에 관한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영업소의 규모와 주변 환경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하여, 유사시 화재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해 3월 24일 제정·공포하여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감소, 안전기준 개발과 안

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둘째, 새로운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셋째, 다중이용업 영업주 및 종사원의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2년에 1회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넷째,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장의 피난계단과 비상구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 상영장치가 설치된 업소에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방법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영화상영전 또는 영상물 상영전에 피난방법 등을 상영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높은 대상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개수, 이전,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위험유발지수가 낮은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의 일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소방서장이 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 등이 법령과 기준에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주에게 시정조치 하도록 명령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화재위험에 노출된 다중이용업소를 국민들에게 알려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주에게는 평소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유

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높임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홉째, 2006년 4월 29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개시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2007년 5월 30일까지 비상구,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벨 설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정함.
 - 노래연습장, 고시원업, 영화상영관 등 19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
-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계획, 소방시설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 등으로 정함.
 -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시기를 전년도 12월로 하고, 수립 대상을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 비상구,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법령위반업소에 대한 공개내용, 공개매체 등
 - 업소명과 업소의 주소,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을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또는 유선방송 등에 공개하도록 함.
-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 기준
 - 지정일을 기중하여 3년간 소방·건축·가스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지정하여 소방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안전교육대상자, 교육시기 등
 - 영업주와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은 2년에 1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 영업장 마다 비상구를 주출입구 맞은편에 설치토록 하고,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로 정함.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과 소화기 설치 의무화
- 피난안내도 비치 장소 등
 - 피난안내도는 영업장의 주출입구,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의 경우에는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물을 3분 이상 상영 의무화

3. 발전 방향

이러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소방관계법령에 화재분석과 용도별 위험도를 고려한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오늘날 다양화된 화재위험 요인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도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새로 도입되는 화재위험성 평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가방법 및 기준을 향상하는 등 정량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화재위험도가 높은 신종 다중업종에 대한 안전확보는 대형사고가 발생되어야만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안전규제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구획, 피난계단, 통로, 방·배연시스템, 내장재 불연화 등은 완벽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관계법령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건축 설계 단계부터 소방상 안전한 건축구조를 확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화재는 초기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바, 화재시 초기대응 및 피난요령 등이 포함된 긴급 상황시 비상대응매뉴얼의 작성·보급과 모의 소방훈련 등을 통한 위기시 국민보호 장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화재 등 비상시 설치·비치된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영업주의 안전관리 실천이 가능하도록 실습 위주의 소방안전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민간보험 등을 연계한 민간방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정착 및 공공안전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한다.

여섯째,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행하여지던 소방안전교육을 지양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서 단위의 안전교육 전담조직 신설, 초·중등학교에

소방안전교육사 배치를 통한 조기 소방안전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곱째, 설명이나 이론보다는 국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접근성이 향상된 시민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대국민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덟째, 오늘날 대국민 안전 확보는 행정기관만의 힘으로는 실현할 수가 없으므로 민간 소방안전단체와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을 생활화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상시 홍보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4. 맺음말

이 특별법 시행으로 고시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개시 전에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소방안전교육도 미리 받아야만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또한 이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는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로 추가적인 경제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후진국형 화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다. ☞